

2026년도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 울주군 만들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2026년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에서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테크노파크원장

1. 지원개요

- (사 업 명) -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 울주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운영사업
- (과 제 명)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 (지원기간) 1년(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지원)

2. 지원대상(신청기업)

○ 신청자격

중장년(예비) 기업	또는	3년 이내 (예비)창업기업
경력·기술 등을 보유한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		경력·기술 등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기업(나이제한 없음)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창업 의지가 강한 자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 산업에 해당하는 기술창업기업 및 지역산업기반 제조업

- ※ 예비창업자일 경우 입주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 울주군 주민인 경우 우대. 단, 울주군 지역 외 기업일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장 이전 필수
- ※ 센터 활용률 등이 높은 기업 우대(출석률 등 저조시 퇴거 조치)

○ 모집규모 : 6개사 내외

- 기술창업생태계 지원사업 입주기업 : 4개사 내외
- 울주군 중장년기술창업생태계 입주기업 : 2개사 내외
- 기존 입주기업 중, 계약 도래기업 연장심사결과에 따라 모집규모 조정될 수 있음
- 입주공간 : 1인실, 2인실, 4인실(실제 근무자 기준으로 입주실 선정)
- 지원기간 : 1년(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3년간 입주지원)
- 제외대상
 - 임대업,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관련 업종 등으로 창업 예정인 자
 - 지역(울주군)외에 본점이 있고 분점,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로 운영하려는 기업
 - 공고일 기준, 타 창업보육센터 및 BI센터 등 창업보육 관련 입주시설 입주기업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사전심의 제외항목에 해당되는 기업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절차)**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입주신청서 외) 제출 등
필요조건 충족 후 선정된 대상에 대하여 입주계약 체결
※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퇴거 될 수 있음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내용)**
 -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4, 5층 입주(사무)공간 무료제공
(주소 :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2)
 - 센터 내 공용 공간 사용(회의실, 스튜디오 등)
 -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무료)
 - 입주기업 관외활동 지원 및 제조·창작 작업실 운영
 - 입주기업 창업패키지사업 지원 및 기타 기업지원사업 정보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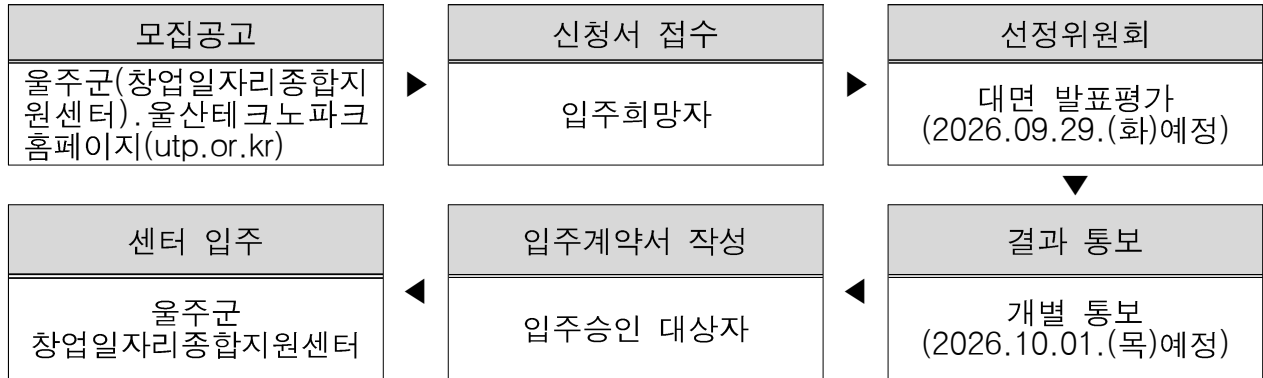
4. 입주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접수 : 2026년 9월 07일(월) ~ 9월 16일(화) 18:00 까지
- 신청 방법 : 본 공고문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메일 접수

○ 선정위원회 : 2026년 9월 29일(화) 예정, 시간 추후 공고

※ 신청자에게 평가일정과 시간·장소 별도통지

○ 진행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양식(붙임 2)
2	대표자(신청자) 이력서	자유양식
3	참여제한 자가진단서 및 제출서류목록	첨부양식(붙임3, 4)
4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대보험가입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목록참고
5	기타, 평가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6. 평가기준 및 방법 참고)	해당시

○ (접수방법)

- E-mail 접수 : lihart@utp.or.kr

(발송 후 확인전화 (052-277-9702) 요망, 접수마감일은 마감시간 준수)

- (E-mail 제목 : (회사명 또는 대표이름) 입주기업 모집신청서 송부) 기재요망

6. 평가기준 및 방법

○ (선정평가표)

평 가 항 목			점수
1	창업자 역량 (30)	1-1.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20
		1-2.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10
2	사업계획의	2-1.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10

평 가 항 목			점수	
	적정성 (20)	2-2. 기술(제품)의 차별성	10	
3	기술성 (20)	3-1.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10	
		3-2. 기술구현의 현실성	10	
4	시장성 (20)	4-1.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10	
		4-2.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10	
5	기타 (10)	5-1.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5	
		5-2.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5	
소 계(A)			100	
가점사항			배점	해당시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 지방청 주최 대회 및 행안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1점	1
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1점	1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우수성실경영자)		3점	3
※가점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최대 3점까지 부여(신청서 제출시 증빙서류 제출)				

○ (평가기준)

- 선정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 점수 70점 이상인 지원대상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필요에 따라 예비후보도 선발)
- 선정결과는 기업에 개별통보하며, 필요시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평가방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서류 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자체검토)
- 면접 평가 : 선정위원회를 통한 심의·평가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제출서류가 허위 일 경우, 선정취소 또는 참여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8. 사전 지원 제외 대상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기업 또는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나.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다.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라.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바.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

10. 문의처

주관기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재)울산테크노파크	황종환 총괄매니저	052-277-9702	lihart@utp.or.kr

- 방 문 시 : 울주군 웅촌면 곡천동문길 32,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4층

☐ 불 입

1. (불입 2)입주신청서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2. (불입 3)참여제한 자가진단서 및 제출서류목록 각 1부. 끝.